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시〉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65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시	2
 [참고] 개별 법률상 노동이사제 규정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현황 ..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8.

다. 회 부 일 :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시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라 함)의 비상임이사에는 3년 이상 재직중인 공사 소속 근로자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임원 등) ① (생략)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제28조(임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공사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노동이사제”란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도 동 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 이후,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공공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부터 공기업¹⁾ 및 준정부기관²⁾에 대하여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해당 공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 KOBACO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³⁾으로, 2026년 2월 현재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음.⁴⁾

< KOBACO 주요 업무(「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 방송광고 판매 대행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표준화, 광고효과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노동이사제의 도입 대상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직원의 정원이 300명 이상, ②수입액이 200억원 이상, ③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⁵⁾이어야 함.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4) 다만, 2024년 3월 선임된 노동이사 1인이 2025년 12월 정년퇴직으로 지위를 상실하여 2026년 2월 기준으로는 노동이사가 공석이나, 조합원 선거를 통해 후보자 선출은 완료된 상황임.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 참고: KOBACO 재정 현황(자본금: 3천억원, 전액 정부 출자)>

구 분		'22년 결산	'23년 결산	'24년 결산	'25년 예산	'26년 예산
방송광고판매액		7,247	5,475	5,161	5,900	5,000
수 입	수 입 합 계	1,553	1,272	1,237	1,434	1,384
	광고수탁수수료	1,154	871	819	933	956
	시설운영수입	194	207	221	244	258
	정부보조금	107	113	115	103	69
	영업외수입	92	72	78	80	97
	부대사업수익	6	9	4	74	4
지 출	지 출 합 계	1,660	1,435	1,380	1,434	1,384
	위탁대행수수료	911	694	665	731	716
	정부보조금	107	113	115	103	69
	인건비	300	296	272	312	312
	경비 및 사업비	342	332	328	288	287
당기순이익(손실)		△ 107	△ 163	△ 143	-	-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그런데,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KOBACO
는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음.⁶⁾

- 2025.12.31. 기준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20명을 포함한
KOBACO 소속 인력의 정원이 297명으로, 공기업 지정기준
인원인 300명에 미달하며 공기업에서 제외되었음.

○ KOBACO의 법적 지위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KOBACO가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
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6) 「2026년 공공기관 지정」, 재정경제부 (2026.01.29.)

- 이에 개정안은 KOBACO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KOBACO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을 통해 KOBACO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 다만, 현재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별 공공기관의 근거 법률에 따로 규정할 경우 노동이사제 운영상 통일성 및 필요한 경우 탄력적 운용 가능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한번 개정되면 경직적 운용이 불가피한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개별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2026년 2월 현재 우리 위원회에 노동이사제를 개별 법률에 규정하려는 유사한 취지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참고] 개별 법률상 노동이사제 규정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현황).
-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취지와 KOBACO의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에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참고**개별 법률상 노동이사제 규정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현황**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	대상기관명	기관 분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20 (박홍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타 공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24 (한창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60 (이훈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365 (이훈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타 공공기관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77 (이훈기)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378 (이훈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79 (이훈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문 의 처

02)6788-5226